

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공고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조정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25일

서울특별시장

1. 허가구역 지정

○ 모아타운 추진 지역(5개소)

- 지정기간 : 2026년 6월 30일부터 2031년 6월 29일까지
- 지정범위 : 모아타운 사업구역(100,944.5㎡) 내 **지목 '도로' 한정**

대상지역			면적(㎡)	비 고
합 계			100,944.5	
서울특별시	서초구	양재동 77	38,793.6	모아타운
	용산구	신창동 76-1	13,844.9	
	동작구	노량진동 84-24	10,726	
	관악구	신림동 661-2	17,972.3	
	송파구	방이동 162	19,607.7	

2. 허가구역 조정

○ 구역변경 1개소

- 지정기간 : 변경 없음

연 번	대 상 지 역	면적 (㎡)		지정기간	비 고
		변경 전	변경 후		
1	광진구 구의동 46 일대	105,957.2	120,702.8	'26.3.17. ~ '27.4.3.	신속통합기획 (주택재개발)
		증 14,745.6			

※ 단, 편입필지 효력발생일('26. 6. 30.)

3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(지정, 조정 공통사항)

용 도 지 역		면 적
도시지역	주거지역	6㎡ 초과
	상업지역	15㎡ 초과
	공업지역	15㎡ 초과
	녹지지역	20㎡ 초과
	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	6㎡ 초과

5.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: 서울부동산정보광장(land.seoul.go.kr)에서 확인*

* 기타정보-토지거래허가-토지거래허가구역(서울시)

※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최종 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(구역 설정)을 기준으로 함

6.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: 붙임 참조

- 붙임 1 (지정)

- 붙임 2 (조정)

※ 토지e음(<http://www.eum.go.kr>),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세부 정보를 확인 가능

붙임 1

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: 지정

1. 서초구 양재동 77 일대

